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수도시설 수질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고성군, 함안군

내 용

「수도법」 제52조에 따르면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서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¹⁶⁶⁾, 제29조제1항¹⁶⁷⁾에 따른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¹⁶⁸⁾를 준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르면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는 항상 0.1mg/L(결합잔류염소 0.4mg/L) 이상이 되도록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전용상수도의 잔류염소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4.0mg/L를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고성군 전용상수도 수질관리 부적정

166)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은 병원성 미생물, 건강에 해로운 무기·유기물질,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및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수질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167)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168)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고성군 관내 전용상수도 인가를 받은 고성군 ○○면 ○○리 0000-00번지 소재 ○○병원(인가일 1996. 12. 3. 취수량 185m³/일, 급수인구 600인)에 대하여 전용상수도 수질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14년 1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총 11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유리잔류염소에 대한 분석결과 아래와 같이 4회 불검출 되었음에도, 전용상수도 인가자인 성심병원은 소독 등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전용상수도(○○병원) 유리잔류염소 분석결과>

(단위 : mg/L)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유리잔류염소 (기준 0.1mg/L이상 4.0mg/L이하)	불검출	0.1	0.4	0.1	불검출	불검출	0.2	0.1	0.1	불검출	0.4

고성군 ○○○○사업소는 전용상수도 인가자인 ○○병원이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소독 등 위생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전용상수도 인가 취소, 효력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함안군 전용상수도 수질관리 부적정

함안군 관내 전용상수도 인가를 받은 4개소는 ‘○○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함안군 ○○면 ○○○길 000-00 소재, 인가일 2007. 5. 2), ‘(주)○○○○○○ ○○○○’(함안군 ○○읍 ○○로 000 소재, 인가일 2006. 6. 13), ‘○○일반산업단지’(함안군 ○○면 ○○리 000번지 소재, 인가일 2015. 8. 19) 및 ‘○○일반산업단지’(함안군 ○○면 ○○리 산00번지 소재, 인가일 2015. 4. 28.)이며, 감사일 현재 ○○일반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는 조성 중에 있어 ○○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과 (주)○○○○○○ ○○○○ 2개소에 대한 수질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14년 1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총 11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유리잔류염소에 대한 분석결과 아래와 같이 (주)○○○○○ ○○○○에서 유리잔류염소가 11회 불검출 되었음에도, 전용상수도 인가자인 (주)○○○○○ ○○○○는 소독 등 위생상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 전용상수도 유리잔류염소 분석결과 >

(단위 : mg/L)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일반 산업단지	유리 잔류 염소 (기준 0.1 mg/L이상 4.0mg/L이 하)	0.43	0.39	0.40	0.26	0.35	0.32	0.23	0.20	0.19	0.27	0.35
(주)○○○ ○○○ ○○○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함안군 ○○○○사업소는 전용상수도 인가자인 (주)○○○○○ ○○○○가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소독 등 위생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전용상수도 인가 취소, 효력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 고성군수는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유리잔류염소가 불검출 되었음에도 위생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전용상수도 인가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고발 및 인가 취소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